Powerful pohang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선					
람					



포항시보

례 ▶

◀ 조

말행 : 포항시

제790호 2010. 8. 3(화)

190×268 신문용지 70g/m²

ㅇ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11호) …………………………… 2 **●** 규 칙 ▶ ㅇ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제532호) ……………… 6 **4** 고 시 ○ 포항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제2010-68호) ··········· 9 ㅇ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제2010-71호) ………… 21 ◀ 공 고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제2010-7호)······ 23 ㅇ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10-733호) …………………… 33 ㅇ양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제2010-745호) …………… 35 회

편집: 홍보담당관(☎270-2233)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년 8월 3일

포항시 조례 제1011호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우리시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민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8조의2(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우리시 시 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 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 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 대한 시민제안이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 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을 발굴 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 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 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 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 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개정이유

우리시가 실제 필요로 하는 제안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제안방식을 보완하고 '08년부터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생활 공감 정책 관련 제안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운영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 나. 제안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요청 절차 신설.(안 제12조제2항)

규 칙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년 8월 3일

포항시 규칙 제 532호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 중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영업장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신청방법 등 중요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혀 했 개 정 아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략)
- 1. (생략)

가. ~ 마. (생 략)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 합 소매업 중 슈퍼마켓은 165제 곱미터 편의점 등은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 매점포

사. ~ 아. (생 략)

- 2. ~ 4. (생략)
- ③ (생략)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 ① ~ ③ (생략)
- ④ 제3조의제1항과 제2항의 영업장 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제3조제1항의 소매인과 제2항1호 라목의 건축물 1층에 있는 소매인 신 청 점포의 출입문이 보도와 접해 있 는 경우 바목의 소매인과는 25m 이 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 기간은 7일로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 합 소매업 중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으로 매장 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 아. (현행과 같음)

- 2. ~ 4.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영업장소간 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는 7일 이상으 로 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

현 행	개 정 안
	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신청방법 등 중요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한다.

1.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소매인 지정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 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토록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 담배소매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간의 거리 제한 기준 신규제정(25m)과 면적기준 강화(슈퍼마켓100㎡→165㎡)로 기존 장소의 업주변경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할 경우 소매인지정이 되지 않아 사인간의 거래시 손실이 발생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리제한 및 면적기준의 개정을 통해 기존 소매업소 영업권의 연속성 보장과 시민의 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슈퍼마켓의 매장면적 기준을 종전기준으로 완화하여 슈퍼마켓 기존 담배 소매인 영업권 보호(안 제3조)
 - 슈퍼마켓 면적 165제곱미터 ⇒ 100제곱미터
-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 간의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기존 담배소매인 영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제외 피해예방(안 제4조)
- 소매인 지정신청 에 관한 공고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안 제5조)

고 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년 7월 28일

포항시 고시 제2010-68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으로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계획적 개 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o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을 작성·고시 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7	옄	тĤ	위 치	Ę	변 적 (m²)	비	고
十七	7	7	명	11 	기 정	변 경	변경 후	"I	11
변경	포항 <u>9</u> 제1종지-	2천·용 구단위	-산지구 계획구역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67번지 일원	291,260	증)748	292,008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m²)		Ų	<u> </u>	경	사	n
변경	_	포항시 오천읍 67번지		292,008	따른				편입면적	산정착오에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1)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7 13	면	l 적 (n	n²)	구성비	비	고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	ul.	14
계	291,260	증) 748	292,00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7,880	증) 748	118,628	40.6		
제3종일반주거지역	160,740	_	160,740	55.1		
자 연 녹 지 지 역	12,640	_	12,640	4.3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6]	-1	용도	지역	면적	용적률	સંગ/પોસી મે	
표시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m²)	(%)	결정(변경) 사유	
_	포항시 오천읍 111-3 일	용산리 번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180	300	가구 및 획지별 편입면적 산정 착오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 역 면적변경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3	18	25	보조간 선도로	7,650	광로2-3	구평리 구역계	일반 도로	_	경고 제93-92호 (1993.3.16)	사업부지내 628m
기정	중로	1	오1	20	집산 도로	280	대로 3-18	중로 2-27	일반 도로	_		
기정	중로	2	27	15	보조간 선도로	1,480	대로 3-18	대로3-18	일반 도로	_	경고 제93-92호 (1993.3.16)	
기정	중로	2	오1	15	집산 도로	320	대로 3-18	중로 2-27	일반 도로	_	_	
기정	중로	2	오2	15	집산 도로	210	중로2-오3	소로1-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오3	15	집산 도로	156	대로3-18	중로 2-2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오4	15	집산 도로	189	대로3-18	중로 2-27	일반 도로	_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69	중로 3-오1 문덕리152-14	중로 2-27 문덕리1188- 238	일반 도로	_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95	대로 3-18 문덕리1188- 235	소로 2-12 문덕리161-28	일반 도로		포항고 제93-279호 (1993.11.24)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84	소로 1-2	중로2-오1	일 반 도로	_	포항고 제93-279호 (1993.11.24)	

(다) 주차장

7 11	도면	11 21 ml	ما حا	면	적 (m²)	최 초	.ul =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 정 일	비 고
기정	오1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용산천변	2,000	_	2,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라) 녹 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기 정	적 (변경	(m²) 변경후	최 결 정	초 일	ㅂ]	고
기정	오1	녹	지	완충녹지	광로 <i>2</i> 호선	2-2 변	7,300	_	7,300			제2종 주거	등일반 지역

(바) 공 원

	도면		시설의		면	적 (m²)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공 원 명	세분	위 치	기 정	변경	변경후	결 정 일	비 고
계					14,660	_	14,660		
기정	97	문덕10공원	어린이 공 원	문덕리 161-180일원	5,100	_	5,1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99	용산1공원	어린이 공 원	용산리 360-11일원	2,040	-	2,04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100	용산공원	어린이 공 원	용산리 44-5일원	1,520	-	1,52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오1	용산공원	소공원	용 산리 84일원	6,000	_	6,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사) 학 교

э н	도면	시설명	시설의	اد اد	면	적 (m²)	최 초	n) =
구분	분 표시 시설명 세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 정 일	비고
계					39,670	감) 239	39,431		
기정	46	초등학교	용 산 초등학교	용산리 360-11일원	13,200	-	13,2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42	중 학 교	용 산 중학교	오천읍 용산리	11,730	감) 239	11,491	포항고제93-171호 (1993. 7.26)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43	고등학교	용 산 고등학교	오천읍 용산리	14,740	_	14,740	포항고제93-92호 (1993. 3.16)	제2종일반 주거지역

(사) 학교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42	중 학 교	면적변경 (A=11,730m²→11,491m²)	가구 및 획지별 편입면적 산정착오에 따 른 용산중학교 면적변경		

(아) 하 천

도면		시 설 시설의세		위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 분	기 정	종점	주요 경과지	연생 (km)	작전 (m)	변식 (m²)	결정 일	비고
기정	오1	용산천	소하천	문덕 1188-1	용산 360-12	중로1- 오1호선	0.42	20	8,537		제2종 일반주 거지역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 -7	도 면	면적	획 지 계 획	ul ¬	
가 구	번 호 (획지)	(m²)	위 치	면적(m²)	비고
합계		기정291,260		기정291,260	
입세		변경292,008		변경292,008	
1	1-1	5,100	문덕리 161-180번지 일원	5,100	어린이공원/부대시설
2	2-1	27,450	문덕리 1188-236번지 일원	27,45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3-1		므더리 150 4번기 이이	기정11,730	중학교
3	3-1	기정26,470 변경26,231	문덕리 152-4번지 일원	변경11,491	
	3-2	,	문덕리 152-3번지 일원	14,740	고등학교
4	4-1	13,610	문덕리 1188-241번지 일원	13,61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5	5-1	15.040	용산리 360-11번지 일원	13,200	초등학교
5	5-2	15,240	용산리 360-11번지 일원	2,040	어린이공원/부대시설
6	6-1	기정46,643	용산리 360-13번지 일원	기정46,643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변경46,261	중선니 500-15년시 달년	변경46,261	
	7-1		용산리 67번지 일원	기정69,350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7-1		공산다 이 반시 월편	변경69,480	중중구역/구대축디시설
7	7-2	기정78,870 변경79,000	용산리 44-5번지 일원	1,520	어린이공원/부대시설
	7-3		용산리 84번지 일원	6,000	소공원/부대시설
	7-4		용산리 111-13번지 일원	2,000	주차장/부대시설
녹	지	7,300	용산리 300-2번지 일원	7,300	_
하	천	8,537	중로 1-오1호선 변	8,537	_
도	로	기정62,040	문덕리 1188-611번지 일원	기정62,040	
	خاب	변경63,279	쇼ㅋ너 1100 U11권시 글편	변경63,279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구	도 면 번 호 (획 지) 위 치	면 적 (m²)	구	분	계획내용
			. 0 -	지정용도	•어린이공원 및 부대시설
			■ 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5% 이하
1	1-1 (문덕리 161-180	5 100	■ 용적률		•60% া ক্রী-
1	일원)	5,100	■ 높 이		•3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27,450	■ 건폐율		•50% 이하
	2-1 (문덕리 1188-236 일원)		■ 용적률		•300%이하
2			■ 높 이		•30층 이하
			■ 배 치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 장
			■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 용도	지정용도	•학교
		기정11,730	- 07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0.1	7 7 8 11, 7 50	■ 건폐율		•30% ০ ক
	3-1 (문덕리 152-4		■ 용적률		•250%이하
	일원)		■ 높 이		•5층 이하
	2 4	변경11,491	■ 배 치		-
3		011,401	■ 형 태		-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 용도	지정용도	•학교
	3-2		0 7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문덕리 152-3	14,740	■ 건폐율		•30% 이하
	일원)		■ 용적률		•250%이하
			■ 높 이		•5층 이하

가 구	도 면 번 호 (획 지) 위 치	면 적 (m²)	구	분	계획내용
			■ 배 치		-
			■ 형 태		_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8T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60% 이하
	4-1		■ 용적률		•250%이하
4	(문덕리 1188-241 일원)	13,610	■ 높 이		•15층 이하
			■ 배 치		•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
			■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 용 도	지정용도	•학교
			- 8年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5-1 (용산리 360-11번지 일원	13,200	■용적률		•250%이하
	(8년의 500 11년시 월년		■높 이		•5층 이하
			■ 배 최		_
			■ 형 태		_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5			■ 용 도	지정용도	•어린이공원 및 부대시설
			- 9.1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 이하-
	5-2 (용산리 360-11번지	2,040	■ 공원시설	부지면적	•60%০] চ}
	일원)		■높 이		•3층 이하
			■ 배 치		_
			■ 형 태		_
			■ 색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가 구	도 면 번 호 (획 지) 위 치	면 적 (m²)	구	분	계획내용
			■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1	<u>- 2</u> T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기정46,643	■건폐율		•50% 이하
	6-1		■용적률		•300%이하
6	(용산리 360-13번지 일원)		■높 이		•30층 이하
			■ 배 치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
		변경46,261	■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계60 250	<u>-</u>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7-1 (용산리 67번지 일원)	기정69,350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০] ক্ট
		변경69,480	■높 이		•30층 이하
			■ 배 치		•일조량, 통풍 등을 감안하여 남향배치 권
			■ 형 태		•공동주택 : 탑상형, 판상형 •부대복리시설 : 지붕형
			■색 채	_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 용도	지정용 <u>도</u>	•어린이공원 및 부대시설
7			- 9 -	불허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5% 이하
	7-2 (용산리 44-5번지 일원)	1,520	■ 공원시설-	부지면적	•60%○]ठ}
	(중한다 44 ⁻ 5한지 글편)		■높 이		•3층 이하
			■ 배 최		_
			■ 형 태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 0.1	지정용 도	•소공원 및 부대시설
	7-3 (용산리 84번지 일원)	6,000	■ 용 도	불허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_	•5% 이하

가 구	도 면 번 호 (획 지) 위 지	면 적 (m²)	구 분		계획내용
			■ 공원시설부지면적		•60%이 하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 형 태		_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2,000	. or	지정용 도	•주차장 및 부대시설
			■ 8 도	불허용 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 이하
	7-4		■용적률		•60%이 하
	(용산리111-13번지 일원)		■높 이		•3층 이하
			■ 배 최		-
			■ 형 태		_
			■ 색 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구 분	적 용 기 준	계 획 목 표
건 축 한계선	■ 획지계획선과 동일하게 적용	■ 획지계획선과 동일하게 적용

6)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주차장	 공동주택 내 주차장의 지하화로 단지내보행 및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공동주택내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27조1항의규정에 의함 	

(나) 보행동선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보행동선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확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상에 주민공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연계하여 계획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4.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 69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 7. 29 .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588-8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설-소로1류1호선)
 - 명 칭 : 소로1류1호선(국도7호선~체육시설간) 개설공사.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 성 명 : 영우개발(주) 대표이사 김도균
- 4. 사업의 시행면적 및 규모
 - 도로개설 L=773m, B=10m, A=9,352m²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09. 6. 22 ~ 2010. 7. 31
 - 변경 2009. 6. 22 ~ 2011. 7.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 ※ 관계 서류 및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상세한 내용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 70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 7. 29.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남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포항골프장(오션힐스포항컨트리클럽)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 성 명 : 영우개발(주) 대표이사 김도균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 치	યો ભીતા છે	시행	기간	기어기체키
사람정		사업내용	당초	변경	사업시행자
포항도시계획시 설(체육시설-포 항골프장)사업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산208번지 일원	부지면적 : 1,349,089㎡(27홀) 건축면적 : 4,904.94㎡ 건축연면적 : 7,297.6㎡	2007.04.24 ~ 2010.07.31	2007.04.24 ~ 2011.07.31	영우개발(주) 대표이사 김도균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
-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71 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공영차고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 7. 30.

-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영차고지

- 명 칭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포항시장
 - 포항시 남구 호동 산29번지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조성대
- 4. 사업계획 내용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14번지 일원	o 부지면적 : 10,967㎡ -건축면적 : 1,233.5㎡ -건축연면적 : 1,818.9㎡		포항시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 련	토	토지소재지		지 적	편입면적	토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	리의 권리명세	
번 호	리	지번		(m²)	(m²)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문덕	1089	답	149	149			포항시			
2	문덕	1090-1	천	281	281			포항시			
3	문덕	1190-2	답	1,960	1,960			포항시			
4	문덕	1090-3	천	340	340			포항시			
5	문덕	1097-2	답	559	373			포항시			
6	문덕	1188-414	천	555	555			포항시			
7	문덕	1188-415	천	1,678	1,678			포항시			
8	문덕	1188-416	천	693	693			경상북도			
9	문덕	1188-417	천	790	790			경상북도			
10	문덕	1188-418	천	1,047	1,022	포항시 남· 33-		박점연			
11	문덕	1188-419	천	846	846			포항시			
12	문덕	1188-420	천	796	796	포항시 남 세계리 859 원1차 라	-2 미광전	조문자			
13	문덕	1188-421	천	2,911	8			포항시			
14	문덕	1188-422	천	449	79			포항시			
15	문덕	1188-656	천	933	933			포항시			
16	문덕	1188-659	천	299	299			경상북도			
17	문덕	1243	도	258	64			국(농림 부)			
18	문덕	1244	구	598	101			국(농림 부)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교통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54-270-3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10-7호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2010년도 포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2010년 7월 27일

1. 채용내역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 원	담 당 업 무
국제통상협력	시간제 "가" 급	1명	■ 국제통상 협력 및 교섭에 관한 업무 ■ 국제회의, 국제도시와의 협력, 교류 업무 ■ 중국 물동량 및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 업무
국제교류 및 통역(영어)	전임 "다"급	1명	■ 해외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추진 및 발굴 ■ 국제관계, 국제통상, 경제학 등 관련분야 연구 업무 ■ 외국인 방문 등 행사관련 통·번역 지원 업무
사진·영상물	전임 "라" 급	1명	■ 시정홍보 영상물·사진 촬영 ■ 홍보사진, 영상자료 보관 및 관리 등

2. 채용 (자격) 요건

O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항목의 요건을 갖춘 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국제통상협력 (시간제 "가"급)	 ■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관련업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관련업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상 관련업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제통상협력 (시간제 "가" 급)	 ●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 12년 이상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국제통상, 국제협력, 관광객 및 투자유치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해외공관에서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자 우대 ●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요구되는 능력 - 일어, 영어, 중국어 등 언어권별 전문가와 1:1 회화를 통해 어학평가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평가 ※ 여학능력 증빙서류 사본첨부 - 영어(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표) - 일어(JPT, JLPT 등 시험성적표) - 중국어(HSK 등 시험성적표) 						
국제교류 및 통역(영어) (전임 "다" 급)	 ▼제교류, 국제관계, 영어권 통역과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국제교류, 국제관계, 영어권 통역과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국제교류, 국제관계, 통역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7년 이상 국제교류, 국제관계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영어 동시통역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자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요구되는 능력 영어권별 전문가와 1:1 회화를 통해 어학능력을 평가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 ※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첨부 영어(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표) 						

구 분	자 격 기 준
사진·영상물 (전임 "라"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연령 및 거주지

O 연 령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거주지 : 제한 없음

4. 채용 (계약) 기간

O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내 연장 가능)

5. 시험방법

- O 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O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6. 응시원서 접수

O 접 수 기 간 : 2010. 8. 5(목) ~ 8. 9(월) 18:00까지 (토·일요일 제외)

○ 원서 접수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054-270-2081)

O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7. 시험일정

O 서류합격자 발표 : 2010. 8. 13 (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 면접시험 일시 : 2010. 8. 20(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O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8. 25(수),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8. 제출서류

- O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 × 4cm) 2매
 - 응시수수료 : 10,000원(가급), 7,000원(다급), 5,000원(라급) 상당의 포항시 수입증지 부착
- O 이력서 1부 (학력, 자격, 경력, 상훈 등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O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O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최근 5년이내 전·출입 사항 및 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 O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O 자격(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9. 보수 및 복무

O 연 봉

 ■ 국제통상협력 분야 (시간제 "가" 급)
 : 37,790천원

 ■ 국제교류 및 통역 분야 (전임 "다" 급)
 : 31,167천원

■ 사진·영상물 분야 (전임"라"급) : 27,462천원

O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 수당 지급

O 근무시간 : 전 임(주 40시간), 시간제(주 35시간)

O 복 무 : 기타 복무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준용

10. 응시자 주의사항

- O 응시원서는 공고문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O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O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면접시험장에 참석하여 등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O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054-270-2081)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홈페이지(www.ipohang.org)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u>응 시 원 서</u>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응시번호						응시분이	ŧ			사 진 (1)
성명	(한 글	- 글)				주민등록	Ţ		_	. 6개월이내에
76.29	(한 자)				번 호	-			촬영한 상반신 사진
주소							(전 회 (휴대폰			$(3\text{cm} \times 4\text{cm})$
	부	 터	<i>까</i> -	지		학교 5			 공 학 과	학 위 명
학	·	<u> </u>		,			<u> </u>		<u> </u>	7 77 0
력										
 자격	취득일지	}	종	별		병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면허						역				
	ブ]	간 직			 장 명		l <u>위</u>	담 ¹	 당 업 무
주										
요 경										
력										
포항/	시수입증	시	귀 시의 ()분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가급	10,000 \$	빌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0 년 8 월 일							
다급 7,000원							원 인			또는 인)
자급 5,000원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성	한 글	※응시번호	2] Z] (0)
응	명	한 자	응시분야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시	주민	등록번호	-	11-1 0 2 10
丑		$(3cm \times 4cm)$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응시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분야" 를 기재
 - ② 전 화: 상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휴대폰 등)
 -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 ④ 주요경력: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제출한 경력만 인정
 - ⑤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⑥ 수입증지란에는 10,000원(가급), 7,000원(다급), 5,000원(라급) 상당의 포항시 수입 증지를 첨부(수입증지는 포항시청 1층 민원실에서 판매)

	.,	
	이 력 서	
사 진 (3 × 4cm)	성 명 ① 주민등록	루 번 호
(8 ** 1011)		
	생년월일 년 월 일생(만 세)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 령 청

ス	- ブ	소	개	서
/ \		1 1	- / II	/ /

○ 응시분야 :

ㅇ성 명:

2010. 8.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예)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u>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u> 및 전공분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포항시 공고 제2010 - 733호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 7, 28,

1. 공고제목 : 과태료부과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원인 : 불법유동광고물(벽보) 게첨

3. 공고대상 :

성	명	주 소	과태료부과금액	위반내역	비	고
김 도	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03-7 산매화마을501호	170,000원	불법벽보게첨		
박 재	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10리 366-6 웰리치 303호	136,000원	불법벽보게첨		
박 재	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10리 366-6 웰리치 303호	68,000원	불법벽보게첨		

4. 공고기간 : 2010. 7. 28 ~ 8. 11(15일간)

5. 게시장소 : 포항시청,구청, 읍면동 게시판 및 시보, 인테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포항시청 테라노바팀 광고물담당 (tel. 054-270-2363)

※ <u>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u>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항시 공고 제2010-736호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일만 포항 시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년 7월 28일

공개목록

소 속		포항시의	포항시의회 직 위(직급		시의원		성 명			김일만	
본인	과의	매각 또는 4	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 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행인	보유주식 수		학 여부	신탁 (천		신탁 일		신탁 회사	
본	인	천일건설	11,625	1	매각	Ę	58,125	2010.0	7.1	매수인 (성영이)	

포항시 공고 제 2010-745호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양 식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 승 호

2010년 8월 2일

○ 공고사항

	면허번호	포항시 양식어업면허 제50호
	어업의 종 류	어류등양식어업
어	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ण म ठ ४ ४ भ घ
어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76번지
업	성 명	류 웅 대 외 1명
권 자	주민등록번호	460508-1*****
	어업면허기간	2009. 11.05. ~ 2019. 11. 04.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권 포 기 (2.0 h a)
	처분 년 월 일	2010.8.2.
	면허번호	포 항 제 155호
어	어업의 종류 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 류 등 양 식 어 업
어	주 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76번지
업 권	성 명	류 웅 대외1명
자	주민등록번호	460508-1*****
	어업면허 기간	2010.7.30. ~ 2019.11. 4.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지선
	처분 내역	어 업 면 허 (2.0 h a)
	처 분 년 월 일	2010. 8. 2.

포항시 북구청 공고 제 2010 - 178 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 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 북구청장

2010, 7, 28

1. 건명 : 도로의 지정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m²)	도로길이(m)	도로너비(m) (평균값)	지정일자	비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949	949	18.0	15.66	1.15	2010.07.28	

3. 도면 : 북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문의처 : 건축과(054-240-7484)